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89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895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가단3619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6. 1. 13.

판결 선고 2016. 2. 17.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가단361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1. 6. 1. 접수 제617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3) 매매계약해제약정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증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C 및 피고가 위 매매계약해제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해제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해제약정의 해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금덕희

판사김신영

판사전경욱

별지